



, ,

.

2004 7 29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가. (1)

-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5%, 10%)]
- 확정연금형[5년, 7년, 10년, 15년, 20년]
- 상속연금형

. (2)

-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5%, 10%)]
- 확정연금형[5년, 7년, 10년, 15년, 20년]
- 상속연금형

2. , 가

		(1)	(2)
연금지급개시연령(A)		45세 ~ 80세	
보험 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형 :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A세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 :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피보험자 가입연령		만15세 ~ [A-납입기간-7]세	만15세 ~ [A-10]세

3.

	(1)	(2)
납입기간	5년납 ~ [A-피보험자 가입연령 - 7]년납 (1년단위)	일시납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일시납

, 7 .

4.

가. (1)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한다. 단, 제1회보험료는 기본보험료만으로 한다.

(1) 기본보험료 : 1계좌 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납입 가능한 총액은 연간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로 하며, 매회 납입시 최저한도는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

500만원 이상

5.

배당금이 없음

6. 『 』

가.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단, 특약보험료 제외)

. “가” 가 7 ()

, 46 ()

「7. 」, 「8.

“가” 」 「10. “가” 」

「 」

$$\begin{aligned} & \text{인출시까지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 \text{단, 인출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임}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감액시까지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전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 ” 「 ()
) 「 ()
 “ ” 「 」 .

7.

가.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 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단,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8.

가. 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 적립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 (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단,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중 계약소멸, 해약(부활가능기간이 경과한 계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으로 처리한다.
- (4)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립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유지계약의 최저연금적립금기준준비금의 합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일반계정에서 부담한다.
 - (가)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나) 단, 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중 계약소멸, 해약(부활가능기간이 경과한 계약) 등 감소계약이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 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으로 처리한다.
- (5)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 (가) 채권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나) 인덱스(INDEX)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 주식혼합형(1형, 2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2) 제1호의 투자대상은 간접투자자산운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 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단위(6개월, 연단위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 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 (가) 계약자는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3) 계약자의 펀드 변경

- (가) 계약자는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10만원 이상에 한한다.
- (나) 회사는 (가)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다) 회사는 (가)에서 정한 펀드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라) (가)의 경우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가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가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

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6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나)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다) (가) 내지 (나)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9.

이 보험의 제1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가.

이 보험의 연금액 계산시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단,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지급금)을 기준으로 “나”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3)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나)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times 100$

I :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E : 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자산의 월말잔액
 A_6 : 산출시점 직전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다) 외부지표 산출식 = $(B_1 + B_2 + B_3) / 3$

- ① B_1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② B_2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③ B_3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수익률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수익률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수익률

가 . 가 3
 가 . 가 3
 (AA-) 가 . ()
 .) () 5
 15 1 . ,
 ()
 5 .
 15 , 1 16
 15
 .
 가 ,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 (4) 제2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제2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 (6)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3.0%를 적용한다.
- (7)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1.

가.

가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납입후유지비 제외)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6. 기타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약관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약관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단, 월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제1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가) 연금지급개시일에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연금지급개시일의 계약자적립금이 회사가 보증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을 사용하고,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다)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 중 해당 계약의 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7)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2.

가. 1 4

, 1

(,) 50%

· , 10

· 0.2%

· “가” 500

가

· 「6. “ ”」

· (1) 가

가 , 가

가

13.

가. , 7

,

14.

가.

가 (, 가²)
 「 +1% 」 가 (“ ”)
 .

() 가

“ ” 가 가

15.

가.

가

「 -1.5% 」 . (,
 「 9. 」)
)

“가”

1

가

10

2

「 + 1.5%」

가

16.

가.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제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로 한다.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한 경

우,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한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2 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이후 제1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1)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 (8) 특별계정 수탁보수
- (9)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10)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가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적립형(1종) : 월납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납입기간, 10}

(2) 거치형(2종) : 일시납보험료

.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의 제2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

가

.

.

가

.